

집합투자규약 및 일괄신고서 변경 대비표

1. 대상 펀드 : 신영프라임장기주택마련60증권투자신탁(주식혼합)
2. 변경 대상 : 집합투자규약 및 일괄신고서(투자설명서, 간이투자설명서)
3. 변경 사유 :

구분	주요 변경 사항
집합투자규약	①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② 환매수수료 삭제 ③ 자산운용보고서 등의 교부사항 보완
일괄신고서	①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갱신 및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② 환매수수료 삭제 ③ 자산운용보고서 등의 교부사항 보완

4. 효력 발생(예정)일 : 2020년 1월 30일

5. 세부 변경 사항 :

◆ 집합투자규약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내용 개정		
제41조(환매수수료)	<생략>	이 투자신탁은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
제50조(공시 및 보고서 등)	⑨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<u>직접 또는 전자우편의</u>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,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.	⑨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<u>직접,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</u>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,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.
부칙	<신설>	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20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◆ 일괄신고서 (투자설명서, 간이투자설명서)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요약	투자비용, 투자실적추이, 운용전문인력	투자비용, 투자실적추이, 운용전문인력

	<u><생략></u>	<u>업데이트</u>
본문	제2부 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. 투자운용인력 <u><생략></u>	제2부 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. 투자운용인력 <u>운용현황 업데이트</u>
	제2부 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<u>연환산 표준편차 : 5.90%</u>	제2부 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<u>연환산 표준편차 : 5.78%</u>
	제2부 11. 매입, 환매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나. 환매 <u><생략></u>	제2부 11. 매입, 환매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나. 환매 <u>이 투자신탁은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.</u>
	제2부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<u><생략></u>	제2부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<u>기타비용 업데이트</u>
	제3부 1. 재무정보 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	제3부 <u>업데이트</u>
	제4부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.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<u><생략></u> 라. 운용자산 규모 <u><생략></u>	제4부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.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<u>업데이트</u> 라. 운용자산 규모 <u>업데이트</u>
	제 5부 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(2)자산운용보고서 -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집합투자자산을 보관·관리하는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.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<u>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</u> 교부하여야 합니다. 다만, 투자자가 해당 집합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,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우편발송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.	제 5부 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(2)자산운용보고서 -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집합투자자산을 보관·관리하는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.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<u>직접,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</u> 교부하여야 합니다. 다만, 투자자가 해당 집합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,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우편발송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.